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45호의5서식] <신설 2019. 6. 18.>

#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| 접수번호 | 접수일시 | 처리기간 60일 |
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신청인 | 상호 또는 명칭 | |
| | 성명(대표자) | 사업자등록번호<br>(법인등록번호) |
| | 소재지 | 전화번호 |

| | |
|---|---|
| 업무범위 | [ ] 고속철도차량 [ ] 일반철도차량 [ ] 도시철도차량 |
| | [ ] 중정비(重整備) [ ] 경정비(經整備) |
| | [ ] 기타 ( ) |
| 정비범위 설정사유 | |

「철도안전법」 제38조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**국토교통부장관** 귀하

| | | |
|---|---|---|
| 신청인 제출서류 | 1. 정비조직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<br>2.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시설·장비 등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<br>3.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철도차량 정비메뉴얼, 검사체계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| 수수료 없 음 |

처리절차

| 신청서 작성 | → | 접 수 | → | 검 사 | → | 인 증 | → | 정비조직운영기준 발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청인 | | 처리기관<br>(국토교통부) | | 처리기관<br>(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검사 시행기관) | | 처리기관<br>(국토교통부) | | 처리기관<br>(국토교통부) |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